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문지마 범죄와 아동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수원살인사건이후 경기경찰청과 수원시의 대책은 CCTV확대였습니다.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범죄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인권침해를 불가피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가, 강력한 형벌정책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경찰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문제는 없는가,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안전은 없는가, 빈곤과 이주민 차별은 범죄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가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9월 7일(금) 오후 3시

장소 : 아주대 종합관 301호

주최 :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후원 : 수원의제21 추진협의회

<사회> 양훈도 (수원방송 시사토론 진행자)

<순서>

- 형벌정책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범죄의 불평등과 차별문제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범죄와 빈곤, 그리고 지역사회 | 오동석 아주대 교수
-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긴급대책의 문제 | 정유리 수원여성의전화 사무국장

<발표1>

보복으로 치유되는 상처는 없다

형벌정책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범죄의 불평등과 차별문제

박진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래 이렇게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는지, 아니면 요즘 들어 더 늘었는지 연일 강력한 성범죄 기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9월 6일 오후 12시 37분 현재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성폭행' 키워드 기사는 20885건에 이른다. 같은 키워드의 기사가 2007년 한 해 동안 5167건, 2008년에는 7627건 검색된 것과 비교한다면 가파른 상승세다. 참고로 '2011년 범죄 백서(법원 연수원)에 따르면, 강간(성폭력범 포함) 범죄 발생 건수는 2007년 13634건, 2008년 15094건, 2010년에는 19939건이었다"고 한다. "성범죄 신고가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범죄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조차 함부로 말 할 수 없다. 다만 얼마만큼 사회에서 주목하고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발생률이 달라진다."고 한다.¹⁾

우리는 이렇게 비인간적 범죄의 연이은 보도로 소름끼치게 성범죄를 체감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분노하고 있고 국회를 비롯해 경찰과 정부까지 보복을 외친다. 이것을 보고 있는 나는 13살 딸을 둔 엄마로써 그리고 여성으로써 두렵다. 범죄도 두렵지만 물리적 거세까지 외치고 나서는 보복의 정치도 마찬가지로 무섭다. 불안이 영혼을 잠식하는 사회라고 표현해도 되겠는가. 올해 초, 총기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들고 나온 경찰의 태도를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치안이 총기로 유지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겠다는 불안. 불안은 불행하게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 인권은 소중하고 피해자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

강력범죄 뒤에 등장하는 조치들은 분명하다. CCTV, 전자발찌, DNA채취, 범죄자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최근 경향을 봤을 때, 물리적 거세 다음 조치는 총기사용의 확대밖에 더 있겠나 싶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

1) 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성폭력 보도 4배 증가"... 그들이 노리는 것은? [성범죄 막으려면-인터뷰
②] '여성학자' 권인숙 명지대 교수 2012. 09. 06.

키게 된다. 그렇다면 그 다음 싸움은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소중하냐는 논쟁이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에서 인권은 한심한 원칙주의자들의 주장으로 매도된다. 이러한 논쟁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골과 같은 것이라, 한때 가열된 논쟁판에는 끼지 않아야겠다는 결심까지 했었다.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달려온 인권운동이 한순간에 무너질 만큼 가해자를 두둔하는 몰상식한 집단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었다. 인터넷에서 "***아, 너도 당해봐라. 니 딸년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냐..."는 류의 험악한 비난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면 비인간적인 범죄는 더욱 많아지고 있고 그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책은 끝없는 막판까지 치 달고 있으니, 이 논쟁에서 인권이 어떤 역할이든 해야 하는 것이 소임이고 숙명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이 논쟁부터 정리하고 가보려고 한다.

"인권은 단 한번도 가해자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를 두둔하지 않았다."라고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가해자의 인권'이라는 단어에는 가해하는 행위자의 권리를 두둔한다는 혐의가 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인권, 반대편에는 피해자의 인권이 서 있고 가해자의 인권은 결론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읽히게 된다. 그래서 이 언어 자체가 모순이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 분명하게 가해자의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피해자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 그래서 '가해자 대 피해자'의 구도를 갖게 되는 이러한 프레임이 잘못된 것이다. 인권은 가해한 행위자가 아니라 가해한 행위 이후에 그가 속한 '피의자'라는 다른 영역의 인권의 이야기다. 인권은 '피의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피의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다. 누군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죄의 처벌에 대해 책임 있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가해한 행위자가 처벌받는 당시, 국가로부터 정당한 절차와 내용으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강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러한 프레임은 적절하게 들리지 않고 "이래도 저래도 너희들은 가해자들의 인권만 소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반인륜적인 똑같은 패거리"라고 매도당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권이 할 말이 없어서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분노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러한 프레임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국가가 문제다. 반인륜적인 범죄 앞에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비된 이성은 모든 사람을 감옥으로 넣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장치만을 만들고 있다. 이것을 정녕 국가가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쓰레기가 되는 삶들, 추방되는 사람들, 보호되지 못하는 피해자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이하 경기청)에서 각각 주폭 척결, 골목조폭 척결을 표방하며 벌이는 치안단속을 보면 이런 문제는 단적으로 드러난다. 주폭, 골목조폭 척결은 상습적으로 시민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청은 지난 6월 12일 "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주폭 단속 한 달 여 만에 주폭 100명 구속"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속된 주폭의 82명이 무직, 전과 평균 25.7범이다. 이들의 주된 범죄 사실은 영세상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갈취, 폭행 등이다.

“술에 취해 상습으로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고 지역주민에게 행패를 부리며 불안감 조성한 주폭(흥기상해 등 26범)에 대해 / 은평구 물빛공원 일대에서 술에 취해 상습으로 아무 이유없이 폭행을 일삼고 지역주민에게 행패를 부리며 불안감 조성한 주폭(흥기상해 등 26범)에 대해 신고접수, 현행범체포 후 주민상대 폭행사실 목격 및 흥기사용 여부 구증, 상습적으로 부모.동생을 폭행, 상해를 가한 사실 확인, 구속”²⁾ 이들은 동네에서 무전취식하며 주민들을 괴롭혀온 사람들일 것이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직업군과 행동양태를 봤을 때, 경찰이 나서서 구속 100명을 전가의 보도처럼 자랑스러워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한다.

낙오되는 일군의 사람들, 일자리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행패를 일상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구속하고 척결해서 쓰레기 없는 마을을 만든다면, 문제는 없어지는가? 끊임없이 실직하고 더 많이 빈곤해지는 사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 자료에는 “상습적으로 만취한 채 주민센터를 찾아가, “몸이 아픈데 왜 장애인 판정을 해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느냐”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인근 약국.내과.분식집 등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 및 행패 등 난동을 피운 피의자에 대해 주민 153명의 연명부를 제출받아 첫 번째 주폭으로 구속하고“라는 대목이 있다. 결국 주민이 이웃주민을 고발하도록 부추기고, 이런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에서 배제, 격리시키겠다는 조치가 정말 범죄예방에 근본적인 대책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 이들이 자신들의 절망을 던고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방법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들어서도록 만드는 체계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쓰레기처럼 버리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쓰레기가 되는 삶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신 없어도 잘 할 수 있고, 당신이 없으면 더 잘 할 수 있다. 당신이 거기 있어야 할 어떤 자명한 이유도 없고, 당신이 거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만한 어떤 뚜렷한 정당성도 없다. 잉여로 규정된다는 것은 버려

2) 서민생활 위협하는 주폭 척결 추진- 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주폭 단속 한 달 여만에 주폭 100명 구속 - 서울지방경찰청 브리핑 2012. 06. 18.

저도 무방하기 때문에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마치 환불해주지 않는 빈 플라스틱 병이나 일회용 주사기,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 아무도 사지 않는 상품, 조립 라인에서 품질 검사관이 버리는 바람에 한 번도 사용된적 없는 기준 미달 제품이나 불량품 처럼 말이다.“³⁾

자유, 평등, 박애를 자신들의 국기에 담고 있는 프랑스사회는 오히려 철저히 구획화되어 있었고 뿌리깊이 차별적이었다. 프랑스 파리의 시내가 구획한 도시의 공간을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백인과 흑인, 히스페닉과 아랍인이 사는 구역은 도로 하나를 차이로 확연히 구분된다. 치안상황이 그것을 증명했다. 짧은 여행으로 성급히 판단할 수 없겠지만 흑인이 몰려 사는 거리는 대낮에도 걸어 다니기가 위험하다는 주의를 끊임없이 들어야했다. 결국 슬럼화된 지역의 치안상황은 위험한 것이 당연했고 백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구역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안전했다. 교정과 통합이 아닌, 구획과 분리, 배제는 결국 삶의 질에 있어서의 차별을 결론으로 맺게 되지 않겠는가. 지금 주폭과 골목조폭이 없어져, 당장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어느날 내가 주폭이, 골목조폭이 될 수 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떡할까.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절망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잘려나간 절망에 몰려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주선하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게 범죄를 이용해 국가권력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봐야하겠다.

또한 가해행위자들의 범죄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미명하에 강력한 형벌정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정작 보호해야할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미비한 수준이라면 어떡한가. 강력범죄가 관심 밖으로 사라지면 피해자 구제대책도 관심이 줄어든다. 지금도 가해자 처벌 말고 피해 재발방지 대책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한다.

길병원 소아정신과의 조인희 교수는 6일 아침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성폭행, 성 학대를 당한 소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아 정신과 의사를 포함해 전문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다.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7월 발생한 4살 여아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경우 연간 300만 원의 치료지원이 정부 지원금의 전부다. 나주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구조금 최대 600만 원과 긴급생계비 수백만 원, 그리고 수술비와 치료비 정도다.⁴⁾

강력한 형벌정책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

3) 쓰레기가 되는 삶들-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지그문트 바우만. 새물결.

4) www.newscham.net 참세상 "그들을 거세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2012.09.06.

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는 강력범죄에 대한 보다 중요한 대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 인권, 피해자 인권이라는 오역된 프레임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강력한 형벌정책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주 사건이후 가장 이슈가 되는 강력한 형벌정책은 '물리적 거세'를 가능하게 하는 외과적 치료명령을 규정한 법안 발의이다. 의사출신의 여당국회의원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여권 대선주자는 사형제 존치 주장을 하고, 국회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신체 일부를 거세해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고환이 아니라 뇌나 심장, 호르몬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러한 신체 절단형이 포함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현실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을 읽는 모두의 판단이다. 결국 만들어 봤자 위헌이 분명한 법안이 분노의 정서를 등에 업고 공적 장소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신체 일부를 거세해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고환이 아니라 뇌나 심장, 호르몬의 문제가 아닐까. 보복이 아니라 범죄근절을 원하는 게 진심이라면 그쪽을 적출하는 법안을 제출해야하라는 세간의 비아냥을 국회는 들어야 한다.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해 누구나 인지상정의 감정으로 맺는 말은 실제 법안과 다를 수밖에 없다. 국회의 몫과 분노를 다스릴 수 없는 일반인의 몫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저잣거리의 분노가 법안으로 제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신체 절단형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⁵⁾

국민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경찰은 지난 3일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불심검문 부활을 표명했다. 2010년 10월 경찰이 일제검문을 중단한지 2년만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9월 3일 오후 각 지방경찰청과 회의 후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심검문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조치이며, 이것이 이미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의 대부분이 지인사이에서 발생하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도 모두 인근 주민들에 의한 범죄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전 국민을

5) www.rights.or.kr 다산인권센터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과 강력한 형벌정책에 대한 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 2012. 09. 06.

대상으로 하는 불심검문을 발표한 것은 원인과 처방이 너무 달라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조치이다.

경찰은 불심검문이 '임의조항'이고 여러 대책 중에 하나이기에 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지 않고 시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이른바 강력범죄를 처방하는 대책이 결국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통해 열려진다. 일제검문의 부활이 자의적인 권력남용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저항이 필요한 때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일제검문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6)

지난 2011년 봄, 용산참사 철거민들, 쌍용파업 노동자들이 검찰과 교도소에서 DNA를 채취당했다.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였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제 운용이 입법 취지를 벗어나면서 오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2011년 6월 용산 철거민, 쌍용 노동자들과 함께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이고,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이래 경찰과 법무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보내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성남 여성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GPS 위치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의 주제에 있어 기존의 '긴급구조기관' 외 '경찰관서'(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를 추가하고 제공 요청 목적 또한 기존의 '급박한 위험' 외에 '범죄행위'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추가했다.

인권단체들은 유괴, 납치 등 긴급 상황에서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경찰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시 성남 여성살인사건은 GPS위치정보 취득 실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다. 이미 경찰은 소방방재청과의 협약에 따라 실시간으로 GPS 위치정보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사회적 논란을 계

6) www.sarangbang.or.kr 인권운동사랑방 <성명서> '일제검문' 부활,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둔갑 "부당한 불심검문, 저항합시다!" 2012. 09. 03.

기로 일단 경찰의 지속적인 권한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개정을 요구했고, 통과된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자면, 경찰은 체포하고 싶은 노조 간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익명의 제보자의 요청에 의해 GPS 위치정보를 영장없이 제공받고, 그를 체포할 권한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욕망이 경찰에게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가? 나는 눈썹만큼도 신뢰하지 못한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책임에 대한 성찰과 반성 한마디 없이 가해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만을 내 놓고 있다. 이것은 마치 극악한 범죄자 몇 명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보호감호를 하는 것만으로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숙고해서 마련해온 모든 법률적, 인권적 성과들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흐름이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국민 불안을 이용하여 '치안논리'로 새로운 공포정치를 의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⁷⁾

강력한 형벌정책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정말로 현실의 위험이 그렇게 큰가. 지금의 성폭력 공포는 분명 과장되어 있다. 김길태 사건 당시 '200명의 성폭력 가해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장이라도 꼼짝 안 하고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성폭력은 집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아는 사람에게 의해서. 친족간 성폭행이 그렇다. 그런데 여자들 전반을 너무 극단적인 사례에 초점 맞춰서 성범죄의 두려움에 휩싸여가고 있다. 살인까지 동반하는 성폭력은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언론이 주는 정보를 얻는다. 택배 받다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 모두다 택배 안 받기 시작하고. 언론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언론의 성폭력 보도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⁸⁾

위 인터뷰에서 권인숙 교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형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형량은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친족간 성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 방향이다. 최근 화학적 거세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따져보면, 화학적 거세 같은 것을 하려면 1년에 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쉽터로 간다. 이때 한 달에 나오는 비용은 한 달에 13만 원이 안 된다.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

7) "사형집행 재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후 처벌 납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문. 2010. 03. 22.

8) 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성폭력 보도 4배 증가"... 그들이 노리는 것은? [성범죄 막으려면-인터뷰 ②] '여성학자' 권인숙 명지대 교수 2012. 09. 06.

다. 적어도 강력한 형벌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비용이 피해자 보호보다 더 중요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화학적 거세에 이어 물리적 거세 이야기도 나왔다."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성폭력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끌 만한 극단적인 사례만을 기준으로, 분노에 가득찬 실시간 보도로 만들어진 정서를 가지고 전반적인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대응을 하면 일부한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인권감수성 수준을 낮추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로익바강이 쓴 "가난을 엄벌하다"는 미국산 형벌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로익바강은 맨하탄에서 연구한 미국산 형벌국가라는 수출품이 워싱턴과 뉴욕을 출발하여 대서양을 횡단, 런던에서 도착한 다음 전 대륙의 배급망을 통해서 유포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출발처는 20여년전부터 '범죄 엄벌주의' 홍보 업무를 공식적으로 맡은 미합중국 국가기관이다. 범죄율이 정체, 감소하던 기간에 이 '서비스'로 모순적이게도 형무소 수감자 수는 이례적으로 4배나 증가했다"고 쓰고 있다. 결국 강력한 형벌정책이라는 서비스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통계는 없거나 적은 반면, 이 '서비스'로 인해 감옥은 넘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서비스의 수혜자는 미국연방사법부, 국무부, 경찰 및 형무 관련 행정기관들, 그와 연계된 준 공공기관 및 직업단체들, 피의자 변호단체, 언론 미디어, 형무 산업의 불을 타고 세워진 사설 교도회사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한국사회에서도 톨레랑스 제로 즉, 무관용 원칙이라는 말로 등장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법무장관의 일갈은 용산참사, 쌍용사태 등의 과잉된 공권력의 대응으로 드러났다. 결국 강력한 형벌정책이 목적으로 하는 종착점에는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이 아닌, 다른 결론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성범죄는 수면 위에 드러나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수 많은 가부장들에 의해 뻘뻘하게 저질러져 왔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하고도 사회적 지위를 안전망으로 처벌조차 받지 않는 사례들. 피해자로서의 여성들은 양육과정에서 끊임없이 몸조심할 것을 교육받는 반면, 가해자가 될 남성들은 전혀 그러한 다짐과 교육을 받지 않는다. 남성들이 여성과 다양한 성정체성을 존중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폭력으로부터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수원살인사건에서 나타났듯이 경찰은 112시스템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 신고

한 여성의 비명소리를 7분 이상 들었으면서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 당시 문제는 CCTV가 없어서도, 112신고를 하지 못해서도 아니었다. 연이은 경찰의 거짓말은 국민을 더욱 경악케 했다. 심지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한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이 강경량 현 경기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으로 자리 바꾸기만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성폭력을 겪거나 위협을 받는 여성들이 신고할 때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며 발뺌하거나, 마지못해 수사하는 실정이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피해여성에게 모멸적인 2차 가해를 하기도 한다. 수많은 여성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살해당하는 동안 촛불 든 국민들을 겁박하기 위해 총동원되던 그 가공할만한 경찰력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보안'경찰에 쏟는 정성에 비해 '치안'경찰에 쏟는 정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⁹⁾ 또한 교정 당국은 성폭력 범죄자가 복역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마음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고려된 교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가. 인생의 대부분을 교정 시절에서 보내고도 다시 살인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풀 것인가.

결국 정부가 극악한 몇 명의 가해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 놓는 동안, 정작 강력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근본 대책은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강력범죄대책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우리 사회가 숙고해서 마련해온 모든 법률적, 인권적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치안 논리'로 무장한 공포정치는 불안한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불안한 사회에서 여성은 다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는 여성은 피해자로 다시 등장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이다. 위층에서 벌어지는 부부싸움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여성의 비명소리가 새벽잠을 깨웠다. 급하게 112로 신고를 했고, 경찰차가 당도하는 소리가 들리자 위층의 소란은 멈췄다.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던 경찰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자, 신고자인 나에게 전화를 했다. 조용한 그 새벽의 전화벨 소리는 얼마나 컸던지. 경찰은 신고한 집이 어딘지 우렁찬 목소리로 물었고, 두려움에 빠진 나는 신원을 밝힐 수 없음을 알리고 윗집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다시 소곤거리면서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자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다가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쩔꺼냐는 숨죽인 항의에 대한 경찰의 답은 이랬다.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의 개인적 경험은 가정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무능과 법제도의 허점을 충분히 알

9) 국가가 '보안'경찰과 '치안'경찰에 쏟는 양극화의 현상이 있다하더라도 그래서 '치안'경찰의 역할을 막강하게 늘리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게 해 줬다. ‘112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찰들인가, 그들은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경찰조직내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방법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떠한 근무조건에 있는가. 그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찰은 어떤 법을 발의했고, 수원살인사건과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떠한 성찰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특별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벌이는 노력만큼, 정말 꼼꼼하게 챙기고 마련해야할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답이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극악한 범죄자 몇 명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보호감호를 하는 것만으로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다.

형벌을 강화하자는 일부 주장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만연한 폭력을 중단시키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적인 감정의 문제이지, 결단코 정부와 국회에 의해 보복적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할 조치는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 분노를 달래줄 차분하고 안정적인 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때일수록 성폭력이 자라나는 토양인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통념과 편견을 뿌리 뽑기 시작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때일수록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정한 계층과 인물들의 인권침해를 담보로 이루어지는 인권보장 체계는 없다. 국가는 반인권적 형벌 강화 논란으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 아동과 여성의 자기 강화와 인권보장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마련에 착수해야한다.

이주민 범죄, 또 다른 차별의 시작

지난 4월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와 일부 누리꾼들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혐오주장이 확대되어 갔다. 당시 사건의 본질은 외면되었고, ‘국적’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은 ‘범죄 집단화’되었다. 이러한 논리역시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고 이주민 전체에 대한 차별을 가져오고 있다.

4월 22일 방영된 KBS 취재파일 4321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왜?’라는 꼭지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되었다. 이 꼭지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 외국인 밀집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였다. 경찰을 동행 취재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늘어남으로 인해 범죄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준 반면, 정작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실태와 정부의 이주 노동자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주 노동자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이 나라 이주노동자 정책과 결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몇 십년동안 이주 노동자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왔다.

과거 산업연수생이나 취업차 입국한 노동자들과 더불어 이제는 결혼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정책이 나올 만큼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꾸준히 이주 노동자들의 수를 맞추기 위해 인간사냥을 하듯 단속하고, 강제추방을 일삼았고, 또 한편으로는 코리안 드림을 이야기 하며 이주 노동자들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타 민족이라는 차별 속에 임금체불과 성폭력, 단속추방 과정에서의 사망사건, 국제결혼 과정에서 남편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들을 겪었다. 이런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정부의 일관된 이주민정책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다문화를 이야기 하지만 말로만 다문화 일뿐 정작 그들의 권리는 더욱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살인사건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 확산 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야기 되는 것은 인종혐오주의와 이주민 집단의 범죄화이다. 범죄자 한 사람의 문제를 그 집단이 속한 전체로 확산 시키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야기 하는 일부 언론의 논조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주민 집단의 잠재적 범죄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민의 정책과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종차별주의와 다문화 배척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몇 해 전 미국 버지니아에서 이민자인 조승희에 의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끔찍한 범죄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사건 이후 미국사회가 보여준 것은 조승희로 대표되는 한국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범죄화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회가 받아주지 못한 이민자의 범죄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화와 이주민 주거지를 슬럼화 하는 것이 아닌,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차별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우리의 시각에 대한 반성을 말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이주민들의 범죄화에 대한 우려가 아닌, 이주민들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차별과 우려의 시각을 걷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주민의 범죄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한국 사회의 쓰다 버리는 이주민 정책과 준비 안된 다문화 주의, 차별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이주민에 대한 배제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치안에 신경 쓰지 않는 경찰의 무능함과 정권의 무책임함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범죄화에 대한 우려를 이주민 집단 모두의 문제가 아닌 이 나라 정책과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시각에서 다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¹⁰⁾

무엇이 대책일까

지난 수원살인사건의 사후 대책은 CCTV확대로 결론 내려졌다. 경찰의 대책과 수원시의 종합대책 모두 비슷했다. 이것은 CCTV를 통해 안전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와도 부합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요청되는 항목의 상당수가 CCTV설치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CCTV가 만능일 수는 없다. CCTV의 기능뿐만 아니라 역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검증된 효과 이면에, CCTV가 없는 또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막을 길이 없다. 풍선효과처럼 여기서 벌어지지 않는 범죄는 저기서 벌어질 뿐이다. 결국 이런 방식의 결론은 모든 도로와 공공장소, 심지어 사적인 장소까지 CCTV를 촘촘히 설치해야만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가로등을 더 늘리고, 112긴급대응을 철저히 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인권교육을 실질화하는 등의 대책은 한가하고 멀게만 느껴진다. 신고를 포함해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 복원의 요구는 어떤가. 가난할수록 위험해지는 마을을, 가난하더라도 행복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환하고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것은 어떤가. 수원시종합대책에는 해당 마을에 꽃가꾸기 사업이 있었다. 이 대책에 대해 비난이 많았다는 후문이지만, 요구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결국 내가 사는 동네가 살만한 동네라는 것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댓가로 사생활 침해와 감시를 내면화하는, 자신과 공동체의 권리를 국가에게 내주고 맡겨야만 불안이 잠시 멈출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한다.

교과부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가해사실을 기재하겠다는 내용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자, 교과부가 내 놓은 방침은 지금 경찰과 정부가 강력범죄 대책으로 내 놓는 양상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교육에서 조차 교육의 방식이 아닌 처벌과 보복의 방식으로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문제가 극복될 것인가. 낙인과 배제의 방식이 결론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가난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나오고 있다. 어느 순간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강력한 형벌 정책과 이를 통한 보복의 정치가 정말 상처의 치유가 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10) 이 글은 이주민 집단 범죄화 이전에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한다. - 수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경기이주공동대위 '무지개' 2012. 04. 24.에서 상당부분 인용되었습니다.

바로 국가 의무의 수정이다. 경제 싸움터에서는 이미 서서히 물러나고 있는 국가의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국가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형벌 업무는 늘이자는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복지국가'는 이제 시쳇말이니 대신 돈 펴고 잘 쓰는 신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안전(고용, 하회복지, 의효, 교육 등의 생활보험 개념이 아니라, 공익의 우선권과 관련된 정말 말 그대로의 물리적 개념의 안전)을 보살피는 일이나 매진하자는 것이다. 경제국가 소멸! 사회복지국가 약화! 형벌국가 강화! 바로 이것이다.¹¹⁾

11) 가난을 엄벌하다 -로익 바강. 시사IN북.

<발표2>

범죄와 빈곤 그리고 지역사회

오동석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경찰은 뭐하는 거냐며 비판하는 것이 그들의 과잉을 정당화시키고, 안전을 빌미로 공포가 조장된다. 생활공간을 분할하여 '깨끗한 지배'를 실현하려는 전략이 폭력으로 뒷받침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결핍으로, 노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과잉으로 대하는 경찰이 공(公) 권력을 자처한다.¹²⁾

최근 '학교폭력'과 주폭(酒暴)에 이어 성폭력이 누적적으로 국가의 타깃이다. 즉자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책이 홍수를 이룬다. 그러나 범죄와 빈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은 오래오래 지속되어야 한다. 지역은 전국의 부분이 아니다. 지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다. 세계적인 것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다. 최근 국가가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은 전혀 반대방향이다. 즉물적이고 단세포적이며, 무엇보다도 파시즘의 부활이라고 할 만큼 폭력적이다.

교과부는 학교에서 학생을 폭행한다. 보통 학생들에게는 과잉경쟁을 강요하고 소수 특권 학생들에게는 탄탄대로를 보장하며, '학교감옥'에 불만인 학생들을 사찰하고 기록하며 현재는 물론 그들의 미래까지 담보를 잡고 사회에서 배제하려 한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용인하고 주간 입시노동 강도를 높이고 야간강제 입시노동을 강요한다. 행정기관과 경찰은 범죄대책을 명분으로 해서 CCTV를 통해 감시하고, 저인망식으로 검문하고 잡아간다. 그 사이 국방부는 군에서 "유신반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종북'으로 규정하는 식으로 잠재적 위험분자를 확장한다.¹³⁾ 다수당의 대통령후보는 "예전 해도 그렇게 주장"했다며 "흉악한 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공언한다. 한국이 15년 동안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사형 집행 재개를 암시하고 있다. 변화에 눈 감고 과거로 회귀하려 하니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신독재의 상속인'임을 공언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는 잠재적 범죄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12) 하승우, "'주폭' 잡는 경찰, 노조 잡는 용역," 시사IN Live 2012.9.6., <<http://m.sisainlive.com/article/View.html?idxno=14083>>, 검색일: 2012.9.7.

13) 한겨레 2012.9.5.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의 범위를 늘리려고 한다.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적용하려 한다.¹⁴⁾ 물리적 거세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까지 제출되었다. ‘법률적 불법’의 시대이다. 이미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지침(교과부훈령 제239호, 제257호)을 통해 시행령 불법 또는 지침 불법 시대를 연 바 있다. 국가는 권력의 제물을 확장할 뿐이다. 교과부가 학생들을 엄히 다스리려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국가의 구성과 임무를 재배치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는 까닭이 또한 여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범죄와 빈곤의 문제를 국가 아닌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무엇이 문제냐면 모든 게 다 문제이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면 그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연결 지으면서 풀어내야 한다. 늘 모여 있으면서, 그 곳 중 중요한 곳이 바로 지역이다.

2. 범죄, 빈곤, 지역을 보는 관점은?

1) 범죄

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흉악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의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신분범으로서의 ‘학교폭력’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연령도 낮아지고 있으면 그 폭력 정도는 심해지고 있다. 그러한 ‘괴물’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그 엄청난 경쟁의 스트레스 앞에서, 획일적인 교육의 횡포를 피해갈 길이 보이는 암담함 속에서,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 속에서 어느 누구도 폭력적이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이다. 그것을 성년들과 사회에 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나 또래끼리 폭력적으로 할퀴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인내를 넘어 순응 아니면 폭력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면 누가 범죄자이고, 누가 잠재적 범죄자인가?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으며,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으며, 인터넷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며, PC방에 자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집 또는 직장에서 컴퓨터 접근성이 쉬운 사람도 있다. 통계학의 힘을 빌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정체성을 들이대며 신분범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 그렇게 따지면 어느 누구도 잠재적 범죄자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남는 것은 국가폭력의 자의적 낙인뿐이다.

물론 범죄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가질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엄청난 규모의 뇌물을 주고받거나 공적 자금을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재벌 그룹 회장이

14) 중앙일보 2012.9.5.

생존을 위해 절도를 하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리 없다. 그러나 아나톨 프랑스의 말처럼 “법의 장엄한 평등성이 부자나 가난뱅이 모두에게 다리 밑에서 자는 것,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 빵을 훔치는 것을 금지한다.”¹⁵⁾

언론은 “최근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회경제적 곤궁에 처한 빈곤·소외층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처지에 놓인 이들이 자신의 절망적 상황을 비관하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절망살인’으로 부를 만하다.”고 보도한다. 사회학자는 “양극화가 급격히 진행된 가운데 부유층과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빈곤층의 불만과 증오를 돋웠다”며 “그동안 자살을 통해 사회적 공격성을 내면으로 돌렸던 빈곤층이 이제 외부로 향해 그 증오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¹⁶⁾

범죄는 사회에 대한 저항이자 표현이기도 하다. 범죄는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窓)이자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시험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범죄의 규정과 그에 대한 대책은 국가의 본질과 작동방식을 드러내는 고백록이기도 하다. 객관식 시험 문제 답 고르듯 네 개 또는 다섯 개의 선택지를 놓고 한 두 개의 답을 고르는 식으로 풀 수 없다. 그 선택지란 늘 정답이 아닌 것들이다. 정답을 위한 들러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선택지와 선택지 속에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다. 그 배경 속에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 ‘범죄’ 라는 이름 붙이기가 정당한지부터 따져볼 일이다.

지금도 국가는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묻기보다는 “근절”을 외치면서 그저 손쉽게 “선명한 적”을 찾아내는 데 급급할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해결, 즉 ‘최종해결’[Die Endlösung: 나치의 유대인 절멸 계획]은 없다.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된다.”¹⁷⁾

2) 빈곤

누가 빈곤하며, 왜 빈곤한가? 빈곤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달라졌다.

생산 노동에 참여하는 모든 성인 구성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것과, 오랜 세월의 노동이 축적한 어마어마한 능력 덕택에 수많은 구성원들의 개입 없이도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똑같지 않다. 생산자들과 보편적 고용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것과, 평생의 계획이 노동이나 직업 능력 또는 일자리가 아니라 소비자 선택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소비자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¹⁸⁾

15) Cotterrell, Roger(코트렐, 로저), 김광수 외 옮김, 법사회학입문, 1992, 152.

16) 한겨레 2012.8.24.

17) 鵜飼哲(우카이 사토시), 신지영 옮김, 주권의 너머에서, 그린비, 2010, 23.

지금은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거나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하기도 하지만, “일하고 있는지,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저생활비(생활보호기준) 이하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는 사람들”¹⁹⁾인 워킹푸어가 많아져가는 시대이고 그러한 사회이다.

빈곤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회를 볼 때, ‘구멍으로 떨어지는 것’은 각각의 안전망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규직 노동자가 되고 싶지만 면접에서 떨어지고, 등록했지만 일을 구할 수 없으며, 생활보호를 신청하러 가도 쫓겨나는 것은 본인들의 경험에서 보면 배척당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 ‘5종의 배제’가 있다...

우선, 교육과정에서의 배제이다. 이 배후에는 이미 부모 세대의 빈곤이 있다.

두 번째는 기업 복지에서의 배제이다. ㅏ...

세 번째는 가족 복지에서의 배제이다. 부모와 자식에게 의지할 수 없는 것,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는 공적 복지에서의 배제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일할 수 있다”, “부모에게 부양을 받아라”,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자식에게 부양을 받아라”, 모자가정에는 “헤어진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아라”,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 일해라”, 홀리스에게는 “주소가 없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등 당사자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떨지에 대한 관심은 없이 그저 되돌려 보내는 기법만이 세련되어가는 것이 현재의 생활보호 행정이다.²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서의 배제이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거기에 어떤 의의가 있는가와 같은 ‘당연한’ 것이 보이지 않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배제를 당하고 또한 그것이 자기 자신 책임론에 의해 ‘당신 탓’이라고 정리되는 것, 게다가 자기 자신이 그것을 내면화해 ‘자신 탓’이라고 인정해 버리는 경우, 사람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한 채,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상태로 빠지게 된다. ...

세상이 힘들어지고, 안전망이 기능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서의 배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라고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라도 찾아내기도 하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해버리기도 한다. 이것이 빈곤 문제를 이해하는 데 제일 힘들면서 중요한 지점이다...

빈곤은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그저 개인의 문제 또는 불운으로 돌리는 생각 자체가

18) Bauman, Zygmunt(바우만, 지그문트), 이수영 옮김, 새로운 빈곤: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천지인, 2010, 8.

19) 湯淺誠(유아사 마코토), 빈곤에 맞서다: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 김동소, 2009, 9.

20) 湯淺誠(유아사 마코토), 빈곤에 맞서다: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 김동소, 2009, 75-78.

빈곤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방해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대책을 국가에 요구하고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청은 당연한 권리이다.

3) 지역

지역에는 누가 살며, 어떻게 사는가? 지역 주민은 남녀노소를 망라하며 다양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오늘날 지역사회의 모습은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도시의 경우 상주인구인 야간인구와 활동인구인 주간(晝間)인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서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을 정의하는 한계가 있다. 생활 중심의 지역공동체의 형성은 지역 공간의 재구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는 현실의 다양한 주민을 중심에 놓고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공통의 집합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에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생활공간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 전체 세금 수입에서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 비율이 50%에 이르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은 20%에 이르며, 전체 고용자의 25%가 지방에서 창출된다”. “지자체는 복지 전달 체계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²¹⁾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 여전히 중앙집권 체제에서 ‘3할 자치’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권한 확보 그리고 지방자치 차원에서 주민의 권한 보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3. 범죄와 빈곤 그리고 지역사회의 상관성

“특권을 누리는 우리와 고통을 받는 그들이 똑같은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는 것”(수전 손택)이 필요하다.

통계는 한부모가정이 많은 지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여준다. 2009~2011년 3년간 서울시의 각 구별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성폭행 범죄 통계를 보면 중랑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3년간 한 달에 한 번꼴로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이어 은평구에서는 30건, 구로구에서는 29건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초구에서는 중랑구의 4분의 1 수준인 10건이 발생했다.

21) 한겨레 2012.7.18.

중랑구는 서울시에서 인구 대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09~2011년 3년간 중랑구의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정 주민 수는 인구 10만명당 평균 1430명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천구가 10만명당 123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강서구 순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서초구(10만명당 269명)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부모가 일을 나간 사이 아이들이 방치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7월 26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대책’을 내놓았지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내용보다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 신상정보 상세공개, 아동 음란물 소지자 처벌 강화 등 성범죄자 처벌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다.²²⁾

아동 대상 성범죄를 줄이려면, 취약계층 자녀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을 전사회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돌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학년 아이의 등하교 때 어른이 데려다주는 게 의무화된 외국처럼, 우리도 방과 후의 아이를 지역사회가 돌보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학자는 “취약한 저소득층 어린이를 보호하는 일은 지역사회 차원에선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아이들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³⁾

그런데 “취약계층”은 왜 생겨나는가? 이미 생겨난 “취약계층”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돌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안정된 소득의 보장 그리고 일자리와 함께 양육 및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고민되어야 한다.

이미 도시재개발 등의 정책을 통하여 빈곤층은 도심에서 쫓겨나고 그 결과 도시에 따라 그리고 도시 내 구역에 따라 지역 공간의 차별화와 계급화가 이루어졌다. 당연히 사회안전망과 치안안전망 또한 그러하다. 양극화는 심화된다. 가진 자들은 자기들만의 요새화된 성채를 쌓고 사적 치안안전망을 강화하고, 빈곤층은 무방비상태에 놓고 사적으로 생존과 안전을 떠맡으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얽혀 든다. 정치적 발언의 몫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력은 표만 얻으려 할 뿐이다. 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의 지역사회는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안전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성범죄자와 동거하는 ‘잠재적 범죄 공간’이다. ... ‘동네 아저씨’가 성범죄자로 둔갑하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자의 가해자들은 주로 빈곤층이다. 실직 등으로 인해 빈곤 상태에 놓인 가해자들은 거주지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고른다. 빈곤 아동이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형사정

22) 경향신문 2012.8.21.

23) 한겨레 2012.7.24.

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성범죄자 가운데 생활 수준이 하류층에 속하는 비율이 60.5%로, 전체 범죄자 가운데 하류층이 차지하는 53.3%보다 높다.²⁴⁾

위험한 ‘동네 아저씨’는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 주로 실직한 빈곤층이라면, 실업과 빈곤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럼에도 부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더 빼앗기고 있으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함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반면 이런 위험한 아저씨는 부자동네에는 발붙일 자리가 없다. 1% 대 99%의 양극화 속에서 지역 공간은 계급적으로 분할되며,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에 의한 치안의 불안이 가속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먼저 확보되지 않는다면, 두더지 잡듯 범죄자를 잡는다고 해도 범죄와 범죄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4. 지역의 공동체 가능성

1) 이주민과 지역공동체

오늘날 세계는 사람, 물건, 돈 그리고 정보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지구적 규모에서 전개됨으로써 국가, 사회, 인간 상호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있다.²⁵⁾ 사실 지구를 모체로 한 인간사회가 총체적으로 세계적 연관을 맺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1990년대부터 불어 닥친 세계화 바람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였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생태.문화.정치.시민사회적인 차원을 경시하고 오로지 경제적 차원에서만 또 경제적 관점에서만 위계적 정당성을 부여한다.²⁶⁾ 그에 따라 국민국가는 그 주권적 권한을, 위로는 초국가적인 정치경제 기구 및 조직에게로, 아래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에게로 점진적으로 분양하는 경향을 보인다.²⁷⁾

반면, 사람의 이동과 거주 및 생활에 대해서 국가는 여전히 강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한편으로는 이주민과의 경쟁의식이 자리 잡으면서, 특히 경제 위기에 봉착하면서 이주민정책은 국가위기관리 방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이민법 규제 강화가 그 예이다. “이민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민자는

24) 한겨레 2012.7.26.

25) 望全幸男/ 確井敏正, 譯음,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市民社會: 國民國家は超えられるか, “文理閣, 2000, 117.

26) Beck, Ulrich(벡, 울리히), 조만영 옮김, 지구화의 길, 거름, 2000, 28. 예컨대 자유주의를 정치적으로 통렬히 비난한 미국의 전 대통령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는 ‘신자유주의자’였다. 이러한 언어의 반전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분리된 지적 입장 혹은 심지어 사상의 상이한 흐름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연유한다(Wallerstein, Immanuel(월러스틴, 이매뉴얼), 강문구 옮김, 자유주의 이후, 당대, 1997, 133-134.

27) 오동석, “세계화와 헌법 그리고 생존주권,” 비교법제연구센터 연구분과 종합포럼집 I: 법과 글로벌스탠다드, 한국법제연구원, 2009, 149-151.

미숙련 노동자와 경쟁하여 임금을 하락시킨다.”, “이민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공공서비스를 소진하여 경제를 고갈시킨다.”, “이민자는 법을 따르지 않으며, 동화되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국민적 정체성을 훼손한다.”, “우리는 이민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이민에 반대한다.” 등이다.²⁸⁾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값싼 노동력의 제공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대를 피할 수 없게 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술인력을 유치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적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사회가 요청된다. 이주민과 우리를 구별 짓는다는 것은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한다는 뜻이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이 방문하고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그들을 환대할 수 있을 때 지역 중심의 생활 중심의 공동체 형성은 가능하다.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환대를 촉구하는 각 조건들로 제한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했던 각 조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서 제시하는 것도 또한, 박애가 아니라 권리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환대(좋은 대우)라는 것은 외국인이 타국 땅에 발을 디뎠다는 이유만으로, 그 국가 사람으로부터 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이다. 그 국가 사람은 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방법을 쓰는 한에서는, 그 외국인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그 외국인을 적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 다만 그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체류권(이를 위해서는 그를 틀림없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접한다는 특별히 호의적인 계약이 필요할 것이다)이 아니라 방문권이다. 이 방문의 권리는 지구 표면에 대한 공동소유권에 근거해, 서로 우호를 맺으려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지구 표면은 둥글고 인간이 무한히 분산해 퍼져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인간이 지구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견디며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지상의 어떤 장소에 대해서 타인보다 많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²⁹⁾

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향하여: ‘수원의제21’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치는 획일적이고 각 지역의 독자성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근거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주민에 의한 정치 및 주민의 구체적 요구에 대응하는 정치가 가능하다.³⁰⁾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논의하는 경우 실제로 구체적인 주민생활의 각 국면에서 파생하는 문제들 또는 주민간

28) Chomsky, Aviva(썬스키, 아비바), 백미연 옮김,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민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과 신화, 전략과문화, 2008, 5.

29) 鶴飼哲(우카이 사토시), 신지영 옮김, 주권의 너머에서, 그린비, 2010, 26-27.

30) 杉原泰雄, 憲法から地方自治を考える, 自治體研究社, 1993, 10.

의 주의(主義).주장(主張)의 대립에 관련된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³¹⁾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는 2013년부터 5년간 추진할 10대 행동의제를 작성 중이다. 그 모토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하게 사는 수원지역공동체’이다. 그 구체적 안은 다음과 같다.

| 의제 명 | 지표 |
|---|---|
| 1. 도시생태농장(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가 되자 | 1) 텃밭조성 면적 2) 도시생태농업추진조직의 개수 3) 학교(유치원등 포함) 텃밭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 |
| 2.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보행 및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자 | 1)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차지하는 교통수단분담률 2)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모임, 자전거모임의 개수 3) 수원팔색길을 걷는 보행자의 수를 늘린다. |
| 3.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자 | 1) 매년 에너지 진단 및 감축활동을 펼치는 아파트(공동주택), 마을, 기관(기업)의 수 2) 2018년까지 절약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이용 10% 줄이기,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 10% 올리기 3)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참여하는 시민 그린리더, 청소년 그린리더의 참가 수 |
| 4. 수원의 7대 깃대종 마실길을 지키고 돌본다 | 1) 7대 깃대종이 관측되는 장소의 수 (증가되는 숫자) 2) 깃대종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 숲의 면적 증가율 |
| 5. 성 평등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를 만들자 | 1) 성평등 교육, 캠페인 개최 수 2) ‘성평등 만족도’ 실태조사를 통한 만족도 비율 |
| 6. 이주민을 편견 없이 대하고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 1) 이주민들의 유형에 따른 경제지표, 편견과 차별 평가 통계 2) 공공 이주민 시설의 이주민 상담 통계 추이(진정, 고소, 고발 건수, 상담 유형 추이 등) 3) 이주민들의 수원시 및 공적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
| 7.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다 | 1)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의 수 2)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직접 발의한 안건의 비율 3) ‘마을주민 만민공동회(가)’를 개최한 주민자치위원회 수 |
| 8.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마을내 창작문화공간을 조성한다 | 1) 지역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조성한 창작문화공간의 갯수 |
| 9. 수원시 사회적 경제의 사회자본 역량을 배가 한다 | 1) 사회적 경제 영역에 참여하는 생산자, 소비자 조직의 개수 2)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 매출 금액 3) 사회적경제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
| 10. 노동자, 경영자, 수원시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일하기 좋은 고색산업단지를 만든다 | 1) 산업단지 내 녹색산업, 녹색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2) 노동자, 경영자, 수원시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역량 증진활동 횟수 3) 산업단지 내 구성원의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적 관점에서 지역적 의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급적 경제.문화공동체를 지향하기도 한다. 사회적.정치적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의제를 제출하고 있기도 하다.

31) 阿部照哉 외 4인 엮음. 地方自治大系2, 嵯峨野書院, 1993, 41.

범죄에 대한 국가의 폭력적 대응, 여성·아동 같은 소수자의 범죄피해자화, 이주민에 대한 편견 등이 2012년 4월 수원에서의 살인 사건 이후 촉발되었다. 그동안 수원시와 경찰이 내놓은 방안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동시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재탕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응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또는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였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방통행의 행정 행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수원의제21이 제안하듯이 성 평등 지역사회,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주민자치를 통해 행정의 민주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 조성 등은 지역공동체로부터 범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서 더디지만 지름길로 가는 해법이다. 비단 수원의제21만이 아니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단체와 조직들이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다. 수평적으로는 그러한 단체와 조직들의 연결망을 통해 총체적 접근을 하고, 수직적으로는 그 민주적 의사를 지방행정 또는 지방입법으로 수렴해 내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당당하게 정당하고 적정한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나란히 함께 가면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비전과 실천이 필요하다.

5.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에서의 고민이라고 해서 지역적 한계에 갇혀서는 안된다. 지역에서 삶의 조건은 보편적인 기준에서 출발한다. 범죄와 빈곤의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필수적이며 근본적인 해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조건의 확보이다. 즉 삶의 기본적인 조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국가로 하여금 재원을 마련케 하여 누구나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소득 보장 제도는 비용이 더 들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다. 모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산 조사로 생길 수 있는 낙인의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소외층에 대한 자선 형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보장을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³²⁾

그래야지만 ‘위험한 동네 아저씨’를 줄일 수 있다. 그래야지만 지역사회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여가가 생겨난다. 야당의 한 대선 후보가 말하는 ‘저녁 있는 삶’은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

다음으로 권력의 구성과 행사를 지역으로부터 재구성해내야 한다.

32) Green, Dunkun(그린, 던킨), 주성수 옮김, 빈곤에서 권력으로: 국가와 시민은 어떻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매진, 2010, 260.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시민의 손에서 벗어나고 있다. 공권력의 정당성은 그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힘이 구성되는 방식에서 나오는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공권력의 행사에만 관심을 쏟도록 만든다. 만일 권력이, 그 정당성을 시민들의 동의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끌어내려 한다면 시민들은 그 권력을 버리고 새로운 권력을 구성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건 좋은 경찰의 '우연한 출현'이 아니다. 우리는 시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을 원한다. 경찰이 시민을 관리하려 드는 게 아니라 시민이 경찰을 관리하기를 원한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고민할 바도 이것이 아닐까?³³⁾

세상의 모든 일을 이웃에 사는 사람끼리 고민하고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서로가 감시하는 체제가 아니라 서로 얘기하는 공동체를 만듦으로써 빈곤과 범죄의 구조적 원인에 대처해야 한다.

부르주아의 기준에 따르면 완전히 불운하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경쟁에서 제외된다. 경쟁은 사회생활이다. 행운은 명예와, 불운은 수치와 동일시된다. 개인은 국가에게 자신의 정치 권리를 넘기면서 자신의 사회 책임도 국가에 위임한다. 즉 그는 범죄자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짐으로부터도 면제해달라고 요구한다. 빈곤자와 범죄자 간의 차이는 사라진다—이 둘은 모두 사회 밖에 있다.³⁴⁾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국가폭력의 대응은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채는 '한방주의' 정서가 그 배경에 있다. 또한 국가를 단일한 실체로 전제하고 그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하도록 하는 관념하는 국가의존주의도 있다. 국가에 대한 후견주의적 요청이 국가의 후견주의를 부추기면서 국가편의주의를 낳는다. 이웃끼리 공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써 국가의 영역을 대체하는 것이 요청된다.

| 참고문헌 |

오동석, “주민참여적 지방자치의 헌법적 정당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1999.

오동석, “세계화와 헌법 그리고 생존주권,” 비교법제연구센터 연구분과 종합포럼집 I: 법과 글로벌스탠다드, 한국법제연구원, 2009, 149-183.

望全幸男/ 確井敏正 엮음,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市民社會: 國民國家は超えられるか, 文理閣, 2000.

杉原泰雄, 憲法から地方自治を考える: 地方自治こそ民主主義のかなめ, 自治體研究社, 1993.

33) 하승우, “‘주폭’ 잡는 경찰, 노조 잡는 용역,” 시사IN Live 2012.9.6., <<http://m.sisainlive.com/article/View.html?idxno=14083>>, 검색일: 2012.9.7.

34) Arendt, Hannah(아렌트, 한나), 이진우/ 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2006, 294.

室井力, “憲法.地方自治法と自治體.住民,” *ジュリスト増刊総合特集: 現代都市と自治*, 1975.
室井力, “憲法.地方自治法と自治體.住民,” 室井力 엮음, *地方自治*, 三省堂, 1983, 258-267.
阿部照哉 외 4인 엮음, *地方自治大系 제2권*, 嵯峨野書院, 1993.
鶴飼哲(우카이 사토시), 신지영 옮김, *주권의 너머에서*, 그린비, 2010.
湯淺誠(유아사 마코토), 빈곤에 맞서다: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 검등소, 2009.
Arendt, Hannah(아렌트, 한나), 이진우/ 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2006.
Beck, Ulrich(벡, 울리히), 조만영 옮김, *지구화의 길*, 거름, 2000.
Chomsky, Aviva(츨스키, 아비바), 백미연 옮김,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민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과 신화*, 전략과문화, 2008.
Green, Dunkun(그린, 던컨), 주성수 옮김, *빈곤에서 권력으로: 국가와 시민은 어떻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매진, 2010.
Wallerstein, Immanuel(월러스틴, 이매뉴얼), 강문구 옮김, *자유주의 이후*, 당대, 1997.

<발표3>

경찰은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경찰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하며

정유리 | 수원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지난 봄 한동안 전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일명 ‘오원춘 사건’이 일어난 지도 어느덧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범죄의 내용적 측면, 즉 2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여성을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의 잔혹성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각종 매체들은 사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도움을 청하던 피해자의 응급전화에 부실하고 안이하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12 신고 녹취록의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말 그대로 못매를 맞았다. 그리고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신고 전화를 받았던 경찰들이 ‘단순 성폭력’이나 ‘부부싸움’ 운운하며 여성의 다급한 전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로써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거의 바닥수준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시민들은 경찰의 무능력을 비판하면서 치안의 부재를 개탄하였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은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음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 급기야 경찰청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하였다. 여성단체는 경찰이 이 사건에 제대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청장이 사퇴할 것이 아니라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더욱 근본적으로 이것이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의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경찰 시스템 전반의 쇄신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위해 진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그러한 주장은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로 간주될 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시신이 356조각으로 훼손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이와 함께 범인이 인육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추측성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인육’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몰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사건이 남긴 중요한 문제들, 정작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해결해야 할 다른 이슈들도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는 듯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수원에서 한 여성이 동거남에게 심한 폭력을 당하다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가해자 몰래 112에 신고전화를 했는데 경찰이 다시 전화를 해 폭력상황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물으며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의 전화를 받았던 가해자는 신고한 일이 없다고 말했고, 경찰은 알았다며 전화를 끊고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폭력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갈비뼈 3대와 허리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경찰은 피해자에게 찾아와 ‘선처’를 구하며 사건을 축소하려는데 급급했고, 이에 피해여성은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요”라고 울먹이며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이 일이 ‘오원춘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불과 600~7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같은 동네에서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가해자일지도 모르는 남성의 ‘신고한 적 없다’는 대답을 곧이곧대로 믿고 출동조차 하지 않은 경찰의 행태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 경찰의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성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거나 한 것인지, 있다면 각 경찰관이 그것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오원춘 사건’ 이후 쇄신하겠다고, 바꾸겠다고 외치던 경찰의 다짐들은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다시 2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한국여성의전화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올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여성들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을 취합하여 81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간의 시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것일까? 이 시점에서 경찰은 지난 4~5개월의 시간 동안 자신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가?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가야 할 점은 경찰에게 여성폭력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매번 여성이 목숨을 잃거나 잔인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건이 선행되어야 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경찰은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등의 변명을 내놓으며 뒤늦게 대책이란 것을 제시하기 일쑤였다. 문제는 그러한 대책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것인 경우가 많았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몇 명의 여성이 잔인한 방식으로 목숨을 더 잃어야, 혹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힘겹게 밝히며 대중 앞에 나서야 경찰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여성단체들은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며, 경찰의 업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그다지 큰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여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의 부재는 일선에서 직접 사건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오원춘 사건’에서도 들어났듯이 대부분의 경찰들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범죄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부부싸움과 같은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부부문제에 경찰이 어떻게 관여하겠는가. 부부싸움은 부부가 알아서 잘 처리하라’며 무성의하게 대응하거나 아예 무대응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찰의 가정폭력 처리과정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사항을 살펴보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피해자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니냐고 묻거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혹은 아버지)을 신고할 수 있느냐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과연 가정폭력(혹은 성폭력, 성매매)이 아닌 다른 범죄의 피해자에게도 그런 언행을 보이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이 가정폭력을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그 외의 다른 폭력의 뿌리라고 간주하고, 가정폭력의 근절 없이는 다른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왜 경찰만은 가정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경찰의 여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적인 태도는 단순히 가정폭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건을 지원하다보면 아직까지도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간주하여 ‘보호할만한 피해자’와 ‘당할만한 피해자’로 이분화 하는 것, 피해자에게 피해의 입증을 요구하는 태도,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규정되었지만 오히려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친고죄 등 다양한 원인들이 중첩적으로 겹쳐져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를 신고한 피해여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이와 같은 ‘2차 피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 사건을 신고한 것 자체를 후회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여성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것에 적절하게 대처하려하기 보다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라는 남성위주의 이분법적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오히려 공권력을 통해 그러한 구분을 강화하고,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지배와 통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판은 경찰이 보호해야 하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국민’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경찰의 역할은 치안을 담당하는 것, 즉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철학자 랑시에르는 치안을 통상적인 개념과는 다른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는 ‘정치’를 ‘치안’과 구별하면서 치안이 국가의 통치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즉, 랑시에르에게 치안이란 ‘어떤 사회 안에서 자리나 기능의 분배, 혹은 몫이나 자격의 분할과 관련된 것이고, 그런 분배나 분할을 사회성원들의 ‘합의(consensus)’라는 관념을 통해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것’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치안은 사회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것은 몫의 분배를 셈할 때 셈해지는 자와 셈해지지 않는 자를 분할하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자와 말할 수 없는 자를 분할하는 것이며, 어떤 것을 문제화할 때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를 분할하는 것이다. 치안은 몫이 없는 자, 말할 자격이 없는 자, 셈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배제하는 배제의 체계를 작동시킨다는 것이다.

랑시에르의 정의를 따르자면, 치안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 모두의 안위를 위해 작동한다기보다는 몫의 분배에서 셈해지는 자, 자신의 권리와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자, 보이는 자와 같이 일부 특정한 이들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다. 결국 치안이란 사회에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몫 있는 자와 몫 없는 자의 구분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려는 통치의 기술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참고한다면, 범죄에 위계와 등급을 나눠 좀 더 중요한 범죄와 ‘단순 성폭력’과 같이 덜 중요한 범죄로 나누어 대처하고, 특정한 상황에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경하고, 무자비하게 대응·진압하는 경찰의 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성이나 다른 소수자들과 같이 이 사회에서 몫이 없는 자, 권리와 입장을 말할 수 없는 자, 보이지 않는 자로 간주되는 집단은 ‘치안’의 체계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다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사회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에 대한 경쟁과 그로 인한 피로감이 심각할 정도로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으로 눌러버려 할 상대로 여기도록 부추기는 사회, 한 번 낙오한 사람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복귀하기 힘들도록 만드는 사회, 개인을 건사해야 할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하는 사회, 공동체가 그 기능을 모두 상실해버려 파편화된 개인을 끌어안을 수 없는 사회.

이렇듯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과 불안의 지수가 높고, 계층간·세대간·지역간·개인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서로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심화되기만 하는 상황에서 개인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한 절망감에 자신의 분노를 ‘묻지마 범죄’와 같이 합당한 이유가 없는 극단적이고 무차별한 폭력의 방식으로 표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여성과 같이 사회에서 소수자로 간주되는 자들이 이러한 폭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이 점은 많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던 연쇄살인이나 끔찍한 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거나 아동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였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것은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너무나도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하는지 나 스스로도 막막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경찰의 힘만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역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인식개선이나 시스템의 변화를 끊임없이 촉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응급한 상황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집주변에 담을 높게 세우거나 자신의 대문 앞에 경비원을 세워둘 수도 없고, 카드키를 통해 드나드는 사람을 통제할 수도 없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경찰 밖에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경찰 밖에 없다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끊임없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미 몫이 있는 자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들,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도 잘 보이는 자들을 위해 나머지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 구분의 선을 공고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선의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자들, 진정으로 경찰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바로 그렇게 할 때 경찰이 자처하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색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